

의안번호	제 127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7월 20일 (제 262 회)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	-----

제출연월일 : 2007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도로법시행령의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 인상
  -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 평균 38%인상
- 점용료 산정기준 중 "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를 삭제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참고자료 : 붙임

##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은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점용료 산정기준)</b></p> <p>①(생략)</p> <p>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p> <p>③(생략)</p> <p>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1미터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p> <p>⑤~⑨(생략)</p>	<p><b>제3조(점용료 산정기준)</b></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부동산가격공시</u> 및 <u>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 -----</p> <p>③(현행과 같음)</p> <p>④ &lt;삭 제&gt;</p> <p>⑤~⑨(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

###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전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 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소 재 지	
				병 지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 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 력구 등 지 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시설 안내 표지		1. 1개	2.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투자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투자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투자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투자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투자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투자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투자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투자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투자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투자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투자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투자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투자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투자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1년	투자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투자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투자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투자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투자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 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7.1.5>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1】**

**점용료산정기준표(제3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아치, 그 밖 에 이와 유 사한 것	시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 주차 장·여객자동 차터미널 화 물터미널 차 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휴게 소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 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 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점용료산정기준표 대비표

**【별표1】**

(금액의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00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에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00
								24,1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길이 1미터	1년	150
								300
								600
								900
								1,200
								1,500
								2,250
								200
								400
850								
1,250								
1,650								
2,050								
3,100								

현행					개정안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어스앵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직경 2.0m 이하 직경 2.0m 초과 직경 3.0m 이하				3,75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5,250					지름 3.0m 초과	7,250	
					길이 1m					1년	200	지름 0.1m 이하
	45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9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1,3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1,80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2,2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3,3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5,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7,850	지름 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간판을 포함한다). 시설안 내표지, 현수막, 아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	1년		15,000	포함한다), 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표시면적 1㎡		1년	9,900
					표시면적 1㎡					1년		
시설안내표지		1개	1년	12,5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계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현수막	계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현행					개정안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기타의 용도	아취	기타의 용도			100	기타의 용도	아취			150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30,000			도로횡단	표시면적	1년	41,400
		기타	1㎡		15,000			기타	1㎡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현행					개정안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단위	기간단위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점용면적 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기타	1년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의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점용면적 1㎡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